

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-1172호

「철도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9월 2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철도사업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철도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9391호, 2023.4.18. 공포, 2023.10.19. 시행)됨에 따라 민자철도의 유지·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운영평가 방법을 정하고,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등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가. 민자철도의 운영평가 방법(안 제 17조)

민자철도에 대해 실시하는 운영평가의 평가 절차, 평가 항목, 평가자 자격 등을 정하여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.

나.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의 업무(안 제 17조의2)

